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소관 : 정보고객정책과]

제정 2015. 11. 1. 특허청고시 제2015-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9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지식재산포인트는 1원에 상응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② “특허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소기업”, “중기업”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1.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2.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 이전받은 자가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최초 납부한 경우 매 건당 특허 30만 지식재산포인트, 실용신안 및 디자인 각 5만 지식재산포인트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제4조(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해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이전한다는 의사가 별표 1에서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실시기간은 3년 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될 것

5.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될 것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6항, 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식재산포인트 신청방법) ①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부여대상 연도분의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이전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이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포인트 사용방법) ①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시 보유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에 다른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며, 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포인트 환수)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5.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환수 사유 발생시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 시행 이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무상 개방되는 특허정보 등을 등록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http://www.ipmarket.or.kr/>)
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http://ccei.creativekorea.or.kr/>)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

(앞쪽)

[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

[권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록번호]

[부여원인]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

([부여대상 특허료·등록료 납부 연차] 제 년차)

☐무상 이전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 의사가 공지된 웹사이트]

☐ 창조경제혁신센터(<http://ccei.creativekorea.or.kr>)☐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http://www.ipmarket.or.kr>)

※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시 납부한 특허료·등록료의 최대 50% 상당액을 지식재산포인트로 부여하며, 무상 이전시 건당 특허는 30만 지식재산포인트, 실용신안·디자인은 5만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부여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부여요건 위반이 확인된 경우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 행위
무상 실시권 설정 후 계약기간(최소 3년) 내 권리자가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무상 실시권 설정 후 계약기간(최소 3년) 내 실시권자가 설정계약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 제외)
무상이전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지식재산포인트 신청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 또는 수급사업자(실시권자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부여된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연차가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연차와 다를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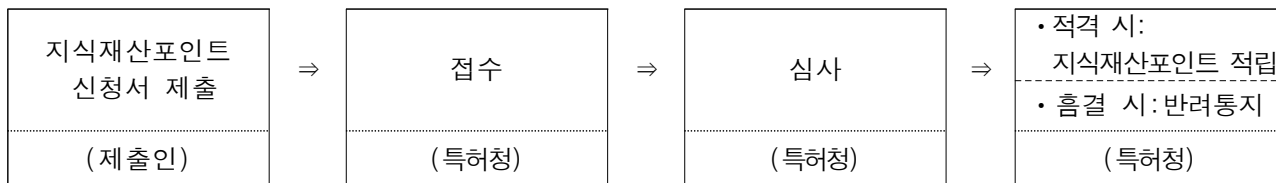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이라는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그 허락한 자, 설정한 자 또는 이전한 자에게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료를 제외)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인]란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코드]란에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3.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란

이 난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의 대상이 되는 권리, 등록번호, 부여원인행위 및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 의사가 공지된 웹사이트를 기재하며, 여러 건을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본 난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각각의 건마다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권리] 란은 지식재산포인트로 신청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등록번호] 란에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록번호 기재 예]

해당 번호	기재 예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다. [부여원인] 란에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의 원인행위가 되는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만일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인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받고자 하는 특허료·등록료 납부 연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특허료·등록료는 기 납부되어야 함은 물론 등록원부에 등록된 실시기간이 해당 연차의 권리존속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이 공지된 웹사이트] 란에는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이 공지된 웹사이트를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4.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시권자 및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이라는 증명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